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06

발의연월일: 2020. 11. 3.

발 의 자:도종환·김승원·민형배

박 정・안민석・유정주

이병훈 · 이상직 · 이상헌

이정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연구개발(R&D)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(R&D)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있음.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운영·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연구개발(R&D)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.

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'전문기관 운영 효율화'를 제시하였고 ('17.7.) 그 후속조치로 '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'('18.1., 경제관계장관회의)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 정비 원칙을 확정하였으며,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/국민체육진흥공단/한국저작권위원회/한국문화관광연구원 4개 기관

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.

콘텐츠, 문화예술, 관광, 스포츠, 저작권 연구개발(R&D)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연구개발(R&D)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문화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융·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.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/한국저작권위원회/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(R&D)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기술개발의 추진) ① (생	제8조(기술개발의 추진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	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
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	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
위하여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	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
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	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
민체육진흥공단에 기술개발사	하는 기관을 「국가연구개발혁
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	신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
<u>수 있다.</u>	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	<u><</u> 삭 제>
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	
령령으로 정한다.	